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27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수진・김성환

곽상언 · 김용민 · 김문수

한민수 • 이기헌 • 이정문

권향엽 • 윤준병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. 아울러,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,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 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.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사항 반영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 고자 합니다.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주요내용

- 가.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(안 제3조)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,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(안 제7조).
- 다.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임기만 료일부터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함(안 제8조).
- 라.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의 서명요청 활동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기획·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(안제10조).
- 마.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- 바.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처하도록 함(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4조제1항의"를 "18세 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 환투표권이 없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2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(이하 "주민등록표"라 한다)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는"을 "제3조제1항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"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은"으로,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을 "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 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이 경우 그 비율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 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한다.

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(이하 "소환청구인서명부"라 한다)에 성명·주소·생년월일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호 중 "1년"을 "6개월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"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 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(이하 "소환 청구인서명부"라 한다)를"을 "소환청구인서명부를"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"서명요청 활동"을 "서명요청활동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"을 "서명을 요청하거나 반대하는 활동(이하 "서명요청활동등"이라 한다)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"로, "서명요청 활동에"를 "서명

요청활동등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서명을 요청할"을 "서명요 청활동등을 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서명요청 활동"을 "서명요 청활동등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, 생 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 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

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)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환 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9조 전단 중 "제61조"를 "제59조(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)·제61조"로, "제82조의4 및 제82조의6"을 "제82조의4 및 제82조의7"로 한다.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"을 "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"로 한다.

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다.

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8조 중 "제85조제1항"을 "제85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4호 중 "서명요청 활동"을 "서명요청활동등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"을 "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 제한다.

5. 거짓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

제31조제1항 중 "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"를 "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등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 기획·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한 자 1의2.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한 자

제35조제3항제1호 중 "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"을 "사전투표사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261조제7항 및 제8항"을 "제261조제10항 및 제1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소환투표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제3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22조제1항 및 제2항,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 ① <u>제4조</u>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

- 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)
- 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 재된 자

제3조(주민소환투표권) ① <u>18세</u> <u>이상으로서 제4조제1항의</u>----

-----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
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
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.
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
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
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
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
되어 있는 사람

- 2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(이하 "주민등록 표"라 한다)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

 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

② (생 략)

제7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) ① 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 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 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의원(비례대표선거구시・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 자치구・시・군의회의원은 제 외하며, 이하 "선출직 지방공직 자"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 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

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 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 람

<u>람</u>
② (현행과 같음)
7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) ①
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
람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
단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이
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
"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"라 한
다)은
<u>해당 지방자치</u>
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
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
<u>하는</u>
<u>이 경우 그 비율은</u>
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
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
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

- 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 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의 10 이상
- 2. 시장・군수・자치구의 구청

 장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

 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

 00분의 15 이상
- 3. 지역선거구시·도의회의원
 (이하 "지역구시·도의원"이
 라 한다) 및 지역선거구자치
 구·시·군의회의원(이하 "지
 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
 한다): 당해 지방의회의원의
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
 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
 상

② ~ ⑤ (생 략) <신 설> <u>의 100분의 15로 한다.</u> 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(이하 "소환청구인서명부"라 한다)에 성명・주소

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 기간)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.

- 1. (생략)
- 2.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 료일부터 <u>1년</u> 미만일 때3. (생 략)
- 제9조(서명요청 활동) ① 주민소 환투표청구인대표자(이하 "소 환청구인대표자"라 한다)와 서 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 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 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(이하 "소환청구인서명부"라 한다)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

•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기
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
나 날인하여야 한다.
제8조(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
기간)
1. (현행과 같음)
2
6개월
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서명요청 활동) ①
소환청구
<u> </u>
<u> </u>

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 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- 제10조(<u>서명요청 활동</u>의 제한) ① 7 (생 략)
 -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 자등이 될 수 없으며,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・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.

1. ~ 5. (생략)

- ③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<u>서명을 요청</u>할 수 없으며, 검인되지 아니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.
- ④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 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 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·시설 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<u>서명요청활동등</u> 의 제한)
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서명을 요청하</u>
거나 반대하는 활동(이하 "서
명요청활동등"이라 한다)을 하
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
서명요청활동등에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
<u>서명요청활동</u>
<u> </u>
<u>.</u>
4

<u>서명요청 활동</u>을 할 수 없다.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제19조(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)
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
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
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「공직
선거법」 제61조·제63조(선거 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
다)·제69조·제79조·제82조 서명요청활동등----.

⑤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, 생년월일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

제11조의2(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)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주민투표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환청구인서명부의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,그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이에 따라야 한다.

-----<u>제59조(제2호 및 제3호에</u> 한정한다) · 제61조-----

제19조(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)

(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) • 제82 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운동기 간"은 "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" 으로, "후보자"는 "소환청구인 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 자"로, "선거"는 "주민소환투 표"로, "정당추천후보자"는 "선 출직 지방공직자"로, "소속정당 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 항"과 "음악(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 악을 포함한다)" 및 "소속정당 의 정강 · 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·정견·활동상황"은 각각 "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"으로 본다.

제20조(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) | 제20조(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) 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 동기구의 설치, 신문광고,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, 언론기 관 초청 대담・토론회,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

<u>제82</u>
<u>조의4 및 제82조의7</u>

①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기간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방 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 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할 수 없다.

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주민투표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・배부,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개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)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(생략)
- 2. 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 를 전송하는 행위
- 3. ~ 6. (생략)

(2)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주</u>
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
 제22조(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)
 ① (생 략)
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
 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
 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

표를 하지 아니한다.

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 대표자, 주민소환투표대상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인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을 말한다) 및 당해 지방의 회의 의장(지방의회의원이 주 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 하며,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 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당 해 지방의회의 부의장을 말한

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2

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

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(현행과 같음) 제22조(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) ① (현행과 같음) < <u><</u> 삭 제>
3

저	1282	조(벌	칙)	제2	20조	:제3	항으	기	규	정
	에	의ㅎ	구여	준	용 5	티는	Γ	공	직	선
	거钅	럽」	제(35조	:제	<u>1항</u> 의	의	규	정	을
	위팀	반하여	वे	주면	민소	환특	王马	운	동	을
	하기	시나	하거) ē	한 >	자는	5ե	4	0]	하
	의	징역	에	처한	나					

- 제3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<u>서명요</u>
 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
 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
 「공직선거법」의 규정에 의
 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
 자 하는 자를 지지・추천 또
 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

<신 설>

	<u>단 삭제></u> 제28조(벌칙)
제30조(벌칙) ①	
4 <u>서</u> 명요청활동등	제30조(벌칙) ①
4 <u>서</u> 명요청활동등	
- 	
	<u>명요청활동등</u>

- 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 <u>해당하는 자는</u> 2년 이하의 징
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 에 처한다.
- 1.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<u>자</u>
- 2.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

 여 적용되는 「공직선거법」

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

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
- 제31조(벌칙) ① 제20조제3항의
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공
 직선거법」 <u>제85조제2항 및 제</u>
 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
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
 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
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20조제2항(제2호를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

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
원회에 신고한 자
② 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
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는
<u><삭 제></u>
<u><</u> 삭 제>
lo1 ਕ (ਸੀ ਹੀ) <i>(</i> 1)
31조(벌칙) ①
<u>제85조제3항 및 제</u>
<u>제85</u> 보세5 등 전
<u> </u>
· <삭 제>
<u> </u>

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3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

<신 설>

2. · 3. (생략)

- 제35조(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 태료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- 1. 주민소환투표사무원·<u>부재자</u> <u>주민소환투표사무원</u>·개표사 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·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. ~ 4. (생 략)

제32조(벌칙)
1.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
를 위반하여 서명요청활동등
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등을
기획・주도하는 등 서명요청
활동등에 관여한 자
1의2.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
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
하거나 하게 한 자
2.·3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
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3)
1 <u>사전투</u>
<u> 표사무원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 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공직선거 법」 <u>제261조제7항 및 제8항</u>을 준용한다.

4			
	- <u>제261</u> 조제10항	및	제11항-